

우리나라의 지방환경세 도입방향과 과제

이 현 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인류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통된 문제가 환경이다. 실제로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엘니뇨 현상 등으로 전 세계에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논의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를 출발로 유엔환경 기구가 창설(1972)되면서 각국 간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이루어지고,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환경 대책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근래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 이루어졌다.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자 각국 별로 의무적 감축량을 정해 이를 이행토록 하는 협약이다.¹⁾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교토

1)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국제협약을 지칭한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16일에 발효되었고, 제1차 의무이행기간이 2008년~2012년 으로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 39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 39개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

의정서의 의무이행 당사국이 아니지만 향후 의무이행 당사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교토의정서 체결이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탄소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생성 되어 2007년 600억 달러에서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²⁾

이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해 현재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해 전술한 정책수단들에 비해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환경세제를 2007년부터 도입하였다. 이 교통환경에너지세는 기존의 교통세를 폐지하고, 세원을 존치시켜 환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교통환경에너지세는 국세로 환경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문제는 오염으로 인한 원인제공자와 이후 수혜자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의 지역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환경세의 도입방향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과정은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규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의 지역성과 지방환경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환경세 도입방향과 이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환경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

1. 환경정책수단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은 환경이 갖는 공공재의 특성에 기인한다. 구체적인 정부개입수단, 즉, 환경정책수단에는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 정부에 의한 직접규제이다. 이는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법령에 의해 직접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그 방식은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 등 제제조치를 취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인가 및 허가,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정부가

이행국은 아니지만, 향후 제2차 의무이행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선행연구로 다음을 참조, 기석도(2005), “교토의정서와 환경세 관련 정책의 방향”, 사회과학논총 제4집,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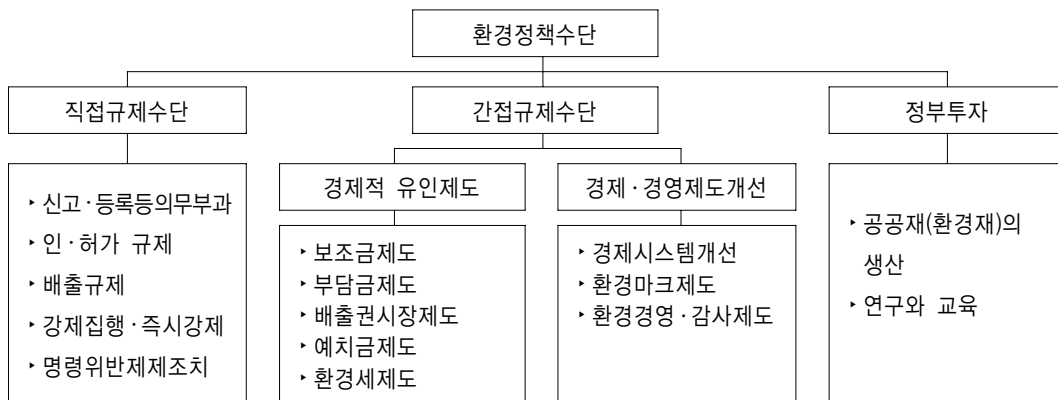
2) 한국경제신문기사, 2008.2.22.

오염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적 의무화하는 것이다. 오염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위반 사항별 법적 및 행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직접규제는 구체적으로 5가지가 있다(김동복, 2005:297-301). ①신고·등록·표시 등의 의무부과이다. 이는 내용상 가장 약한 환경규제수단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의무부과는 인·허가의 대체적 수단 내지 보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정규모이하의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에 대한 신고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인·허가 규제이다. 이는 특정한 행정목적, 즉, 질서유지 또는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 공해(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제, 특정 동·식물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예외적 승인제, 하천점용허가제, 공유수면매립면허제 등이다. ③배출규제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에 대한 시설개선, 오염물질방제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허용기준 등의 의무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직접강제 또는 강제징수 하는 것을 말하지만, 즉시강제는 의무사항의 전제 없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⑤기타 수단으로 규제명령의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및 정지, 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이다.

둘째, 정부의 의한 간접규제이다. 이는 가격기구인 시장에 대한 보완조치에 해당한다. 간접규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데 먼저 한 가지는 경제적 유인제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 및 경영제도의 개선이다. 후자는 경제내부의 시스템개선, 환경마크제도, 환경에 대한 경영 및 감사제도 등을 통해 실시된다. 반면, 전자의 경제적 유인제도는 현재 각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에는 환경세제, 보조금제도, 배출부담금제도, 거래가능배출권제도, 예치금제도 등이 있다.

[그림 1] 주요 환경정책 수단 분류



자료 : 이창균(1996),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쪽 재구성.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정부정책수단은 정부투자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환경재를 생산하고, 오염을 퇴치하는 한편, 환경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대해 직접투자하는 것이다.

이상의 다양한 환경정책수단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간접규제방식의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 유인제도가 직접규제방식에 비하여 오염감축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직접규제방식을 통하여 오염감축량을 개별환경오염자들 간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비용과 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격기구를 통한 경우, 오염자가 오염부담금이나 조세제도에 따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둘째, 경제적 유인제도는 기술혁신을 위한 오염유발자의 동기유발효과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오염자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자들은 오염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휘문, 2005:5)

이와 같은 이유로 각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개입 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럼 다음으로 경제적 유인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적 유인제도

1) 보조금 제도

환경규제수단으로 보조금제도는 오염감축을 촉진시키거나 오염감축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오염유발기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비용, 처리시설비용, 오염처리비용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오염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정책이다. 환경정책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창균, 1996:15-17).

첫째, 교부금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물의 설치나 연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교부금방식은 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생산물 가격의 상승을 막고, 생산자에게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둘째, 융자방식의 보조이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방지시설 설치, 오염방지용품의 생산,공단지역으로 오염배출시설의 이전 등에 대해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시장이자율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셋째, 조세특전을 통한 보조이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금 또는 부담금을 면제·감면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기업의 가격상승을 소비자부담으로 전가시키지 않고 조세특전을 통해 면제받게 되어 기업의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이상 보조금을 통한 환경오염 해결은 단기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킬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보조금제도는 사회적 피해를 제공한 오염원인자에게 징벌대신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해를 얻기 어렵고, 오염유발기업이 생산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대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해결하려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오염배출기업은 보조금등의 혜택으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오염의 심화와 나아가 오염유발기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필요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부담금제도

부담금은 오염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오염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발생시킨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부담시킨 것이다. 이러한 부담금에는 대략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배출부과금이다. 이는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부담금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나 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즉, 배출부담금제도는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일정한 부과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이다(유한성·유태현, 2001:140). 배출부담금제도는 부담금제도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 사용자부담금이다. 이것은 배출된 오염물질의 집합적 처리비용의 지불금으로 요율은 고정요율 또는 처리된 물질의 양에 따라 변동적일 수 있다.

셋째, 제품부담금이다. 이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단계 또는 폐기처리시에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가격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즉, 제품의 특성이나 제품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행정적 부담금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으로 예를 들면 특정 화학물질의 등록이나 규제의 시행 및 강화에 드는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차등세이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부(負)의 제품부담금 역할을 한다.

이상의 부담금제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의 배출억제기술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퇴출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부담금제도 특히 배출부담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자원에 대해 세금형태로 가격을 책정하여 여타 경제재와 동일하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둘째, 정부의 세입을 증대시켜 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 유인효과와 기업의 환경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담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모니터링과 배출량에 따른 고지서발송 등 필요 정보에 대한 요구량이 많고, 이를 위한 감시비용과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3) 배출권 시장제도

배출권(排出權)시장제도는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증서의 형태로 발행하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것을 구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기업에 의해 구입된 배출권은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휘문, 1997:21-22).

오염배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구입하였으나 그 기업이 구입한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가능하며 생산량의 확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한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권이 유통되는 시장이 완전경쟁하에 있고,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의도한 최적오염배출수준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총량이 신축적으로 조절되고 시장기능이 원활한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또한 가격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대응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 배출권을 분배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리고 배출권이 소수기업에 집중되어 거래시장이 독·과점화 된다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과 배출권으로 인해 오히려 배출권 소유량 만큼에 대해 환경을 오염시켜도 된다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환경의식의 저하를 초래 할 수도 있다.

4) 예치금제도

예치금제도는 오염물질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오염주체로 하여금 부담케하는 피구세와 오염물질을 감소시킴으로서 외부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피구보조금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제도라 볼 수 있다. 즉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에게 예치금이라는 형태로 부과함과 동시에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비용을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적립된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이창균, 1996:11).

예치금제도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 재생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사용할 경우 유용한 경제수단이 된다. 이 제도는 맥주병 등 병류의 재활용 제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예치금제도는 환경의 질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원료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병을 재활용하는 것이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과 같은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5) 환경세

환경세는 정부가 오염물질 방출행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여 오염물질의 생산자가 인식하는 개인적 생산비용을 사회적 생산비용과 일치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휘문, 1997:18-20).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생산자가 이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인식하는 개인적 생산비용은 사회적 생산비용보다 더 낮게 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의 차이를 조세를 통해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피구가 제창하여 피구세라 부른다.

이상의 환경세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개입은 하되 단지 왜곡된 가격정보를 수정하는 일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세는 오염피해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최적세율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의 환경관련 정책수단에서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배출권제도, 직접규제 등에 대한 정책수단별 효과 및 장·단점을 비교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을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배출권제도	직접규제
단기적 효 과	· 오염물질배출억제 · 사회적비용최소화	· 오염물질배출억제 · 사회적비용최소화	· 오염물질배출억제 · 사회적비용최소화	· 오염물질배출억제
장기적 효 과	· 오염물질배출억제로 기술 개발촉진 · 기업퇴출촉진으로 오염물 질배출감소	· 오염물질배출억제로 기술 개발촉진 · 기업퇴출촉진으로 오염물 질배출증가	· 오염물질배출억제로 기술 개발촉진 · 기업퇴출촉진으로 오염물 질배출감소	
장 점	· 정부재원확보가능		· 정부재원확보가능 · 소득재배분가능	· 오염물질배출긴급 억제 가능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배출권제도	직접규제
단 점	· 부담금비율추정필요 · 부담금징수율추가비용 소요	· 보조금비율추정필요 · 보조금재원 필요	· 적정배출권의 배분 · 배출권으로 인한 환경의식 저하 · 독·과점시장 가능성	· 각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과대하게 생산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과소하게 생산할 가능성 있음 · 오염물질배출 억제 기술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 효과가 적음
국 가	호주, 벨기에,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캐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미국 등	미국 등 선진국	

자료 : 이창균(1996),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쪽 재구성.

이상의 환경정책수단 가운데 환경세, 부담금, 보조금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세와 부담금을 비교하면 오염억제효과, 오염감소를 통한 신기술 개발, 오염자부담원칙, 응능 부담원칙 등에서 환경세보다 부담금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 및 안정성, 투자와의 연계등 효율성에서 환경세가 월하다.

다음으로 환경세와 보조금을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양자는 유사하다. 양자는 단기적으로 오염 처리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기업의 단기적 이윤에서 차이가 있다. 즉, 보조금은 오염배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비해 환경세는 이윤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환경세는 오염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금제도는 오염수준의 양에 따라 오염정화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염수준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세는 조세라는 최소비용으로 오염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상을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존재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세가 가장 유리한 정책수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 다음으로 환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다양한 환경정책수단들이 사용되는가와 이어서 환경세 도입의 당위성과 지방환경세의 도입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환경의 지역성과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

1. 환경의 특성

환경은 회소한 자원이다. 그런데 환경과 자원은 별개의 것이다. 자원은 경제활동 내부에서 활용되는 것, 또는 이용가능성을 가진 것, 노동력 투입에 의해 가공된 것 등이다. 이에 비해 환경은 경제활동의 기반이지만 직접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환경요소는 발전용 냉각수, 미네랄워터, 상·하수도 등으로 시장에서 활용되어 상품의 재료 또는 직접상품이 되고, 다시 그 일부가 이용되어 수질문제와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된다. 즉, ‘물’의 경우, 환경이 수자원이 되고 다시 수자원 활용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순환구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원은 경제활동 내부에서 경제적 재화로 활용되지만, 환경은 직접적 경제재는 아니며 인간활동의 기초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양자의 문제, 즉 자원문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속적 순환관계에 있는 것이다.(宮本憲一, 1989:57-59).

이와 같은 환경의 순환구조는 그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환경의 공동성과 비배제성이다. 즉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환경은 자원화 되더라도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일시적으로 독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재로 되어도 저가로 이용하게 된다.

둘째, 환경의 불가역성이다. 이는 환경이 역사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파괴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환경이 재생 또는 창설할 수 있다하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파괴된것은 재생해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가진 연속성 및 내구성과 일상 생활의 순간성 및 비연속성과 관계된 시간차로 환경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환경의 지역성이다. 이는 환경의 지역적 불균등을 의미한다. 환경의 요소들인 경치, 자연 및 도시의 경관, 물, 공기, 산림, 토지 등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환경이 문제될 경우 특정 지역 및 특정 공간에 편중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³⁾.

이상으로 환경이 가진 고유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속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제도 가운데 환경세가 우수한 것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환경세의 조세적합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환경문제의 성격에 대해 다음의 6가지로 대별하기도 한다. 첫째, 환경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둘째, 환경오염은 부의 효용을 갖는 물질이다. 셋째, 환경은 파괴에 대한 일정부분의 재생능력을 가진다. 다섯째, 환경은 비가역적 성격을 가진다. 여섯째, 환경문제는 지역고유의 성격을 갖는다(라휘문, 1997:9-10).

2. 환경세 도입과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

1) 환경세의 조세적합성 및 당위성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개입수단들에 대해서는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유인제도가 우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유인제도 가운데 환경세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함도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환경세가 조세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김동복, 2005:312).

첫째, 환경세의 법적 적합성이다. 환경세의 도입에 관해 일반적인 조세로서의 과세부담 원칙인 응능부담 원칙, 근대국가 이후 조세국가원칙 등에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환경세의 세율이 비례원칙 및 기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납세자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적 수단인 환경세라는 신세목이 법률을 통해 도입된다면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또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도 없다(강주영, 2006:541).

둘째, 환경세가 조세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환경세의 목적은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공익성에 있고, 조세로 도입된다면 일반성·강제성·무보상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세는 재원확보와 정책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셋째, 환경세가 기존의 직접규제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1]과 <표 1>을 통해 분석된 바와 같이 환경오염규제 및 환경보전에 대해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환경세는 공익성, 일반성 및 강제성, 정책성, 실효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선진국에서도 기존의 환경정책수단들을 보완 또는 대체할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환경세의 도입을 논의하고 나아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환경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라휘문, 1997: 68-74). 첫째, 앞서 전술한바와 같이 환경세의 이론적 우월성이다. 이는 재원확보와 정책목적달성 등에서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둘째, 환경관련 투자재원확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단순화를 위해 환경세도입이 필요하다. 즉 현재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정비하고 재원확보와 오염감소 유인효과가 있는 환경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 고양과 국제화의 흐름에 대응이다. 환경문제는 환경이 가진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 그 가치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 즉 환경은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원재료, 생산, 소비를 통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환경정화로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환경운동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목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세는 조세부담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환경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한 간접환경세 및 목적환경세로 분류된다. 직접환경세의 종류로는 배출세가 있고, 간접환경세로는 탄소세, 비료세 등이 있다. 그리고 목적환경세로는 각종 부가세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 목적환경세는 행정비용이 적고, 필요한 정보수준이 낮으며 시행의 복잡성도 적고,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협약관계도 약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⁴⁾.

반면, 환경세로 인한 환경오염정도와 연관효과는 직접환경세가 가장 높고, 간접환경세 및 목적환경세는 그 연관효과가 낮게 된다. 다시 말해서 환경세는 환경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량에 따라 그 배출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오염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표 2> 환경세의 유형별 비교

	직접환경세	간접환경세	목적환경세
조세형태	직접세	간접세	간접세
행정비용	높음	낮음	낮음
연관효과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종류	배출세	탄소세, 유황세, 오존세, 비료세	super fund, 기타 환경투자자원 마련을 위한 세
경제발전단계	선진국	선진국/개발도상국	선진국/후진국
필요한 정보의 수준	높음	낮음	매우낮음
효율적 시장의 존재	필요없음	필요함	필요함
정책의 우선목표	오염경감	오염경감/조세수입	조세수입
효율적 감시/집행능력	필요함	필요없음	필요없음
현행 조세체계와의 양립성	필요없음	필요함	필요함
시행의 복잡성(세율 계산)	높음	낮음	낮음
국제협약에의 순응성	필요없음	필요함	필요없음

자료 : 광태원·김홍균(1995), 『환경세의 도입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쪽 재구성.

4) 행정비용은 환경세의 고안 지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기존 조식을 활용 할수록 낮게 된다. 연관효과란 환경세에 의한 오염감소 효과로 행정비용과 상충 관계에 있다(광태원·김홍균,1995:9).

2)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

여기서는 전술한 환경의 속성과 환경세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환경세의 도입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세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에 대한 지역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로 세분화하여 논의한다(라휘문, 2005:8-12).

첫째, 환경과 지방세원칙이다. 이는 지방세의 과세원칙으로 보편성, 안정성, 정착성, 응익성 등의 원칙과 부합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일반적이며 공동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염유발물질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편성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세수확보면의 안정성원칙도 충족된다. 또한 환경문제는 지속적이고 지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착성원칙에도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이 가진 지역성, 즉, 지역편재성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따른 피해와 환경보호로 인한 손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응익과 세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다.

둘째, 환경에 대한 지역관리의 필요성이다. 이는 환경의 지역성에 기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정책수립 및 집행, 환경보호 관리 및 감독 등에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게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문제에 대한 대응도 신속할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앙정부의 통일적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대응 등 3가지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의 경우 오염정도에 따라 상기의 3가지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환경의 지역성에 기인해 지역주민에 대해 직접 대응이 신속한 지자체 및 지자체의 협력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오염문제, 산림파괴, 대기오염정도 등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지자체 및 지자체간의 협력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그 필요재원의 확보와 자율성이 필요하다. 환경은 사후적 예방이 우선이고, 차선적 보완수단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그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세는 환경의 지역성에 기초하여 지방이 중심적인 역할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다음으로 지방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은 수질, 대기, 산림, 토양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환경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V. 지방환경세의 도입방향

1. 환경자원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문제의 원인과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기초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문제, 광역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문제,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하여 담당해야 할 문제, 중앙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담당해야 할 문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은 주된 오염의 영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수도권의 지자체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은 개별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 흐르고 있고, 또한 수원(水源)을 타 지역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게 물은 광역적 관점에서 물에 대한 보전 및 재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물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자연림은 황폐화와 인공림의 증가, 생활배수의 유입, 토사유출, 상수원 오염 등 실제 그 지역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수원보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물의 문제는 전국 일률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개별유역을 단위로함과 동시에 광역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2. 환경대책 및 방향

물의 문제는 자연환경으로 본래 가진 물의 순환기능(수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을 보전·고양시키는 정책과 수원환경에 대한 수질오염원 감소라는 양방향에서 접근한다면, 수원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킴에 따라 산림황폐 방지, 양질의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가능하다.

이러한 수원환경의 보전 및 재생은 수원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을 이용하는 지역 모두, 즉 공동이용지역 전체의 과제인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수도사업자 등에 개별적 대응이 아닌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수원환경보전 및 재생은 비용부담을 포함해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수원환경세’ 도입사례

상기와 같은 방향에서 실례로 일본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수원환경세’ 도입이 있다. 카나가와현에서는 수원의 환경 보전 및 재생을 위해 1998년부터 2005년 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구체적으로 12개 사업을 지정하여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神奈川縣, 2005b)⁵⁾.

카나가와현에서는 수원환경 보전 및 재생 대책 수립에서 주민참가를 유도하여 공청회와 도민회의 개최, 사업 실시에 대한 주민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소요재원의 부족분에 대해 주민부담을 유도하여 개인주민세에 대한 초과과세를 실시하고 있다⁶⁾.

카나가와현의 주민참가를 통해 수립된 대책에서 5년간(2007-2011) 추진할 12개 중점사업에 대한 총비용 중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특정재원으로 충당가능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 부족재원이 190억엔으로 추산하였다. 그래서 이 필요부족재원에 대해 연평균 38억엔 규모를 조달해야만 달성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세수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카나가와현 수원환경보전 및 재생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특별회계 내에 ‘카나가와현 수원환경보전 및 재생기금’을 동시에 설치하였다.

한편, 수원환경보전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연도 부족 소요재원 38억엔에 대해 개인주민세(縣民税) 균등할의 표준세율 1000엔에 300엔을 추가부담케 하였고,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4%에 0.025%를 추가시켜 초과부담하도록 있다. 즉, 수원환경보전 및 재생사업추진으로 주민세균등할이 종전 1000엔에서 1300엔으로 인상, 주민세소득할이 종전 4%에서 4.025%로 인상된 것이다. 이는 수원환경보전 및 재생사업을 위한 연간 필요재원 38억엔에 대해 카나가와현의 납세자 1인당 평균부담액으로 연간 약 950엔(월액79엔)이 추가부담된 것이다(神奈川縣, 2006).

이상 일본 카나가와현의 수원환경세도입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물자원에 대해 환경의 예방적 측면과 오염에 대한 사후처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수자원에 대해 산림의 보전 및 재생을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보전 및 재생이라는 자연적인 물의 순환기능에 목적으로 두어 양질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 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水源)의 출발점인 산림지역과 지역수원림지역, 하천 상류지역, 지하수, 댐 등 광범위하게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수원환경세는 응익원칙에 기초한 공동부담 형태의 과세이다. ‘응익적 공동부담’이란 일반적 환경시책을 넘어 특정한 환경보전 시책에 의해 특정주민은 물론 광범위한 주민이 이익을

5) 수원환경 보전 및 재생을 위한 12대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수원의 산림조성사업추진, 오야마산의 보전 및 재생 대책, 수원상류정비사업, 간벌재의 반출사업, 지역수원림정비지원, 하천 및 수로의 자연정화 대책추진, 지하수보전대책추진, 댐의 집수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정비촉진, 댐의 집수역에 대한 합병처리 정화시설 정비촉진, 사가미하천 수계유역 환경공동 조사, 수자원 환경의 모니터링조사, 현민참가에 의한 주민의견 반영사업 등이다(神奈川縣, 2005a).

6) 수원환경보전 및 재생을 위해 ‘카나가와현민회의’ 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의 입안 및 수정, 주민의사반영, 주민참가사업추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 카나가와현민회의의 위원은 학자, 환경보전 관련 NGO단체, 공무원등으로 구성되며, 모니터링조사는 이 현민회의의 위원들 가운데 전문위원회를 두어 효과 감증을 한 후, 현민회의에서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책에 대한 최종평가를 정리한다. 최종 결론을 현재 진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수정 및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얻는 경우, 수익자부담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책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전체가 조세의 형태로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이현우, 2007:323)⁷⁾. 다시 말해서 수자원의 환경보전 및 재생을 통한 직접 수혜자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자원을 공동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수원환경세는 구체적으로 현행 주민세에 대한 초과부담형태의 방식으로 도입된 점이다. 이는 세수의 안정성과 응익원칙에 부합된 과세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과세부담형태에 대해 정리하면, <표 3>이다.

<표 3> 비용부담원칙

부담원칙	내 용
원인자부담	환경오염의 원인제공 당사자가 비용부담, 부담방법 : 과징금, 인센티브과세
수익자부담	환경시책의 수혜자가 비용부담, 수익과 부담 관계 명확, 부담방법 :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공동부담	광범위한 환경시책에 대한 일반행정경비의 비용을 주민전체가 조세의 형태로 공동부담, 수익과 부담 관계 불명확.
응익적 공동부담	일반적 환경시책을 넘어 특정한 환경보전 시책에 의해 특정주민은 물론 광범위의 주민이 이익을 얻는 경우, 수익자부담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책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전체가 조세의 형태로 공동부담

자료 : 이현우(200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제주학술대회 논문집, 342쪽.

넷째, 수원환경세는 주민세에 대한 초과부담형태이므로 조세저항이 강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장기간에 걸친 주민설득을 통해 도입된 점이다. 민·관으로 구성된 ‘카나가와현민회의’를 설치하여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모니터링 조사, 정책평가, 수정 및 보완,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납득하고 이에 대한 공동부담에 합의가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수원환경세는 전술한 환경세의 유형에서 직접환경세와 목적환경세의 혼합형태에 해당된다. 이는 주민세에 대한 초과부담방식을 취했으며 그 목적이 환경보호 및 재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에서 알 수 있다. 환경정책목적에 대해 목적세 형태로 부담될 경우 부가세의

7) 과세부담방식에는 통상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원인자부담으로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제공 당사자가 비용부담시키는 것으로 과징금, 인센티브과세 등이 해당된다. 둘째, 수익자부담으로 환경시책의 수혜자가 비용부담하는 방식이고, 수익과 부담 관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공동부담이 존재하고 이는 광범위한 환경시책에 대한 일반행정경비의 비용을 주민전체가 조세의 형태로 공동부담하는 것이지만, 수익과 부담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이현우, 2007:323, 金澤史男, 2007).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세인 주민세에 초과부담식을 도입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의 주요 원칙인 응익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여섯째, 수원환경세는 정책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정책 목적, 즉 인간의 존재기반을 구성하는 환경에 대한 보호 및 재생을 목적으로 자연적 순환기능에 중심을 두어 시행된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재원을 그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민·관 합의기구에 의한 정책유도를 통해 실시된 것이다.

일곱째, 수원환경세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어 도입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상이한 일본의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지방세제도는 우리와 동일한 지방세법에 근거한 법정세목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가능한 법정외세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위한 신세원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었다(이현우, 2008).

카나가와현에서 도입된 수원환경세는 이러한 법정외세 제도의 존재로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의 신설 법정외세가 있다. 즉, 제1유형은 국세로 포착할 수 없는 담세력에 주목하여 지방세수의 안정화를 도모한 것으로 법정외 보통세중 임시특례기업세가 있다. 제2유형은 특수한 재정수요 발생과 이에 대해 원인자 부담을 통해 부담시키고 세수는 그 재정수요에 충당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어세, 환경협력세, 승안환경보전세, 숙박세, 역사와 문화 환경세 등이 있다. 제3유형은 환경목적의 인센티브과세로 각종 산업폐기물세가 해당된다. 제4유형, 환경정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재원조달 목적으로 주민세에 초과과세한 것이다. 이에는 각종 산림환경세, 수원환경세가 해당된다(金澤史男, 2007). 이러한 유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법정외세의 유형

제1유형	• 국세로 포착할 수 없는 담세력에 주목하여 지방세수 안정화 도모. • 예 : 법정외 보통세중 임시특례기업세
제2유형	• 특수한 재정수요 발생을 원인자 부담, 세수는 그 재정수요에 충당. • 예 : 환경협력세, 승안환경보전세, 숙박세, 역사와 문화 환경세
제3유형	• 환경목적 인센티브과세. • 예 : 각종 산업폐기물세
제4유형	• 환경정책등 독자적 재원조달 목적, 주민세에 초과과세 • 예 : 각종 산림환경세, 수원환경세

자료 : 이현우(200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제주학술대회 논문집, 342쪽.

V. 맺음말

이상 지방환경세의 도입방향과 과세에 대해 수원환경세를 사례로 하여 고찰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은 환경이 가진 고유한 성격 중 공동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존재한다. 물론 그 대응방식은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통일적으로 대응한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통한 대응이 있음은 고찰한 바이다.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세임이 판명되었고, 이를 위해 지방에서 재원확보와 환경정책의 목적달성에 우월한 지방환경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세가 조세로 성립하려면 다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조세법률주의의 합치, 과세원칙, 부담원칙, 과세방식, 과세주체 및 과세객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고에서 실사례로 수원환경세를 고찰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방환경세를 도입할 경우 다음 사항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부담원칙이다. 사례에서 분석된 것처럼 응익적 공동부담원칙이 바람직하다.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일반적이다. 이는 어느 일방에 의한 비용부담이다. 이에 비해 응익적 공동부담은 환경의 원인제공과 동시에 최대 수혜자인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물론 특정 오염제공의 원인자는 존재하지만 산림황폐와 생활배수 등 불특정 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보다는 환경보전 및 재생으로 인한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공동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불특정다수에 의해 발생하고, 또한 환경의 자연적 순환기능에 의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환경세의 과세방식은 주민세 초과부담방식이다. 지방세원칙 중 응익원칙이 중시되기 때문에 소득과세인 주민세에 환경에 대한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지역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

◀◀◀ 참고문헌 ▶▶▶

- 강만옥(1996), 환경세의 국제동향과 국내 도입방안(1)(2), 환경과 생명 통권10호, 11호.
- 강주영(2006), 환경세의 헌법적정성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환경법학회.
- 곽태원 · 김홍균(1995), 환경세의 도입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경기개발연구원(2005), 경기도의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 기석도(2005), 교토의정서와 환경세 관련 정책의 방향, 사회과학논총 제4집,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동복(2005), 환경오염규제수단으로서 지방환경세, 공법연구제33집제2호, 한국공법학회.
- 김춘호(2003), 환경세의 도입방안, 환경법연구 제25권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 라휘문(1997), 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라휘문(2005), 환경오염억제를 위한 지방환경세의 도입구상,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설계경(2006), 환경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옥무석(1998), 환경세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14집, 한국국제조세협회.
- 유한성 · 유태현(2001), 지방환경세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제3집, 한국재정정책학회.
- 이현우(200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제주학술대회 논문집.
- 이현우(2008),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2008-08, 경기개발연구원.
- 金澤史男(1997), 地方の自己決定權と税財政制度, 都市問題 第88巻第5号, 東京市政調査會.
- 金澤史男編(2005), 財政学, 有斐閣.
- 金澤史男(2006), 地方環境税と水源環境保全施策評價の課題, 浄化槽 No.367.
- 金澤史男(2007), 地方新税の動向と地方環境税の可能性, 地方税,
- 神奈川縣(2003), 参加型税制かながわの挑戦—分権時代の環境と税, 第一法規.
- 神奈川縣(2003), 生活環境税制のあり方に関する報告書, 神奈川縣.
- 神奈川縣(2005a), かながわ水源環境保全・再生施策大綱, 神奈川縣.
- 神奈川縣(2005b), かながわ水源環境保全・再生實行5か年計劃, 神奈川縣.
- 神奈川縣(2006), 水源環境保全・再生の計劃と税制の概要, 神奈川縣.
- 宮本憲一(1989), 環境經濟學, 岩波書店.
- 植田和弘編(1999), 環境政策經濟學, 日本評論社.
- 神野直彦編(2001), 課税分権, 日本評論社.
- 林健久(2003), 地方財政讀本(第5版), 東洋經濟新報社.
- 外川伸一(2002), 地方分権と法定外税, 公人の友社.
- 矢野浩一郎(2007), 地方税財政制度(第8次改訂版), 學陽書房.
- 齊藤武史(2003), 新税-法定外税-, 三重大學出版會.
- 池上岳彦編(2004), 地方税制改革(自治体改革7), ぎょうせい.
- 出井信夫編(2007), 地方財政データブック, 學陽書房.
- 黒川和美(1995), 環境税の論点と地方の問題, 地方税 第46巻第2号.